

배포 2026. 6. 18.(목)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6. 18.(목) 12:00
(지면) 2026. 6. 19.(금) 조간

“지역 공공기관 신규채용 10명 중 7명은 지역인재” 2025년 지역인재 채용 현황 발표

- 비수도권 공공기관(184개)의 신규 채용 17,871명 중 12,742명(71.3%)을 지역인재로 채용, 법정 의무채용 비율 35%를 대폭 초과 달성
- 전년 대비 채용 비율 6.8%p 상승, 의무 미준수 기관은 4개 → 3개로 감소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6월 18일(목),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184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지역인재 채용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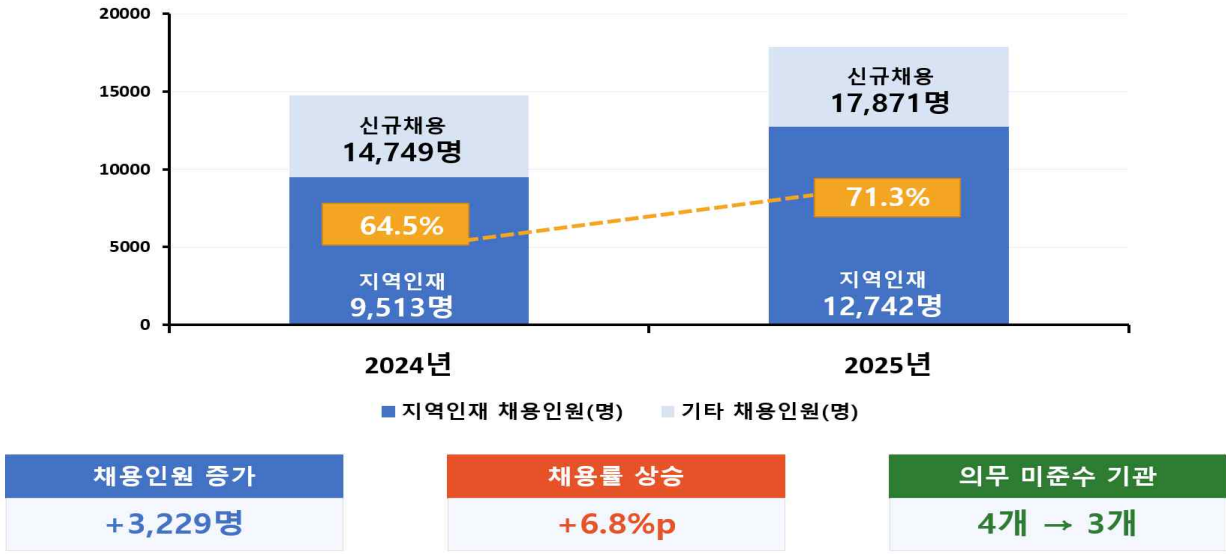
< 지역균형인재 의무채용 제도 개요 >

- (근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
- (의무)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채용의 35% 이상을 지역균형인재로 의무채용(‘24.8월~)
- (대상) 본사가 비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 (지역균형인재) 지방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지방대학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자(고졸 제외, 지방 대학원 졸업 포함)
- (예외) 소규모 채용, 고도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시행령 제9조)
 - ① 연간채용인원이 5명 이하, ② 박사학위 요건의 제한 채용, ③ 경력 요건의 제한 채용, ④ 기관장이 정한 합격기준에 미달, ⑤ 지원자 중 지역인재 비율이 35% 미만

‘지역균형인재 의무채용 제도’(이하, 제도)는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인재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인 공공기관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4년 8월부터 도입되었다. 이후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 결과, 조사 대상 184개 공공기관의 2025년 신규 채용은 총 17,871명으로, 이 중 12,742명이 지역균형인재로 채용되어 평균 채용률 71.3%를 기록하였다. 이는 법정 의무채용 비율인 35%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9,513명에서 12,742명으로 3,229명(약 34%)이 증가하였으며, 평균 채용률 역시 64.5%에서 71.3%로 6.8%p 상승하였다.



의무 이행률 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전체 184개 기관 중 181개 기관(예외적용 기관 포함)이 의무를 준수하여 98.3%의 이행률을 나타냈으며, 미준수 기관은 전년 4개에서 3개로 줄었다. 미준수 기관 2곳은 전문 인력 중심의 채용 구조로 인해 지역인재 자원이 제한적인 기관으로, 이로 인해 의무채용 달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인 채용 실적 상승의 배경으로는 2025년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신규 채용 규모 확대와 함께, 현장에서는 지역인재 지원자 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점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교육부는 의무 미준수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도입 3년 차를 맞은 해당 제도가 지역인재의 성장·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2025년 비수도권 공공기관 채용 현황 조사 결과

담당 부서	대학지원관	책임자	과 장	최우성 (044-203-6232)
	지역대학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민 (044-203-6235)
			주무관	박정현 (044-203-6249)



□ **2025년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

- (조사일정/주체) '26.2.6.(금) ~ 2.26.(목) / 교육부
- (현황) 184개 기관 중 181개 기관(98.3%, 의무예외 포함) 의무 선발 준수, 총 신규채용 17,871명 중 12,742(71.3%)명 지역인재 채용

(단위 : 명, %)

구분	신규채용 규모	지역인재 선발	미준수 기관*
2024년	14,749명 (182개)	9,513명 / 64.5%	4개 공공기관
2025년	17,871명 (184개)	12,742명 / 71.3%	3개 공공기관

* '24년 미준수 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저작권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5년 미준수 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미준수 사유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분야 연구기관 특성상 대부분의 채용인력은 석사·박사 학위를 소지한 공학인력으로 전문역량을 보유한 지방대학 지원자가 부족하며, 특히 과학기술원(KAIST, UNIST, DGIST 등)은 현행 기준상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의무비율 달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한국개발연구원) 석사급 이상 연구 인력 중심의 채용 구조상 전문 역량을 겸비한 지역인재 풀이 부족하며, 국토부의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석사급 이상 제외) 대비 지방대 육성법의 엄격한 기준(박사급 채용 제외) 적용으로 인력 충원에 한계 존재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체 채용인원 총 6명 중 5명은 연구직 박사학위 소지자로 의무채용 예외 해당, 이외 채용인원은 1명(연구직 석사학위 소지자)인바, 비율 달성에 구조적 한계(다만, 박사학위 소지자 중 1명을 지역인재로 채용

※ 「지방대육성법」 제13조③항 : '지방대학육성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대육성법)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1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3.>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대육성법시행령)

제9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8. 13.>

1.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2.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채용 분야가 지방대학에 설치된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학과등이나 전공의 수를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채용하는 경우
3.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신규 채용인원 중 최종 지역인재의 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5. 신규 채용에 지원한 사람 중 지역인재의 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 2024. 8. 13.>

1.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홍보 및 취업알선
2. 용자 및 투자, 자금 조달
3. 판로·기술개발·인력·수출
4. 그 밖에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4. 8. 13.>